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종 지정 기준 마련을 통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승인 및 취소 등 업무 위임·위탁(안 제2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취소 등 분양 관련 업무를 실제 자원을 보존·관리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책임기관의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분양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외반출승인대상종 지정 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
2.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할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 및 분양승인 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사항

제29조제3항에 제7호에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분양 승인 여부 통지

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서 발급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나.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여부 통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 승인 취소 통보

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 승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생략)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예산운용계획서</u>	3. <u><삭 제></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21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u> <u>작성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u> <u>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u> <u>목록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u> <u>같다.</u>
	1. <u>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가</u> <u>높은 해양수산생명자원</u>
	2. <u>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u>

	<u>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생명자 원</u>
	<u>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 수산생명자원</u>
	<u>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을 작성할 경우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 및 국공 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u>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 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 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 자원 분야에 한정한다)을 국립수 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분양승인 및 용도변경승인에</u>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 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6. (생 략)

<신 설>

<신 설>

관한사항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 승인취소 및 분양승인 된 해양 수산생명자원의 반환에 관한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 자원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6. (현행과 같음)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 승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신청서의 접수

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분양승인 여부 통지

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양승인서 발급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용도

<u><신 설></u>	<u>변경 승인에 관한 다음 각목의</u> <u>업무</u> <u>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u> <u>경승인 신청서 접수</u> <u>나.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u> <u>경승인 여부 통지</u> <u>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u> <u>승인 취소 및 반환에 관한 다음</u> <u>각목의 업무</u> <u>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u> <u>인 취소 통보</u> <u>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u> <u>인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u> <u>환</u>
---------------------------	--